

기업 반부패 가이드 요약

I 기업 반부패 활동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

□ 필요성

- (국내·외 환경 변화) 청탁금지법 등 새로운 법규의 제정, 국제사회의 반부패라운드 강화 등 기업의 청렴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
 - ※ 청탁금지법,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위반행위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도 제재(과태료, 형사처벌)하며, '양벌규정'을 통해 기업에 주의·감독 책임을 부여
- (이해관계자 인식 변화) 기업의 투명성, 청렴성에 대한 주주, 임직원, 협력업체, 정부,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수준 상승
 - ※ 세계경제포럼(World Economic Forum)이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 중 기업윤리경영 부문 우리나라 순위 추이
- ('09) 48위 → ('11) 58위 → ('13) 79위 → ('15) 95위 → ('16) 98위

□ 기대효과

- (단기) 청렴 업무처리의 정확성, 효율성 확보 및 법률 위반에 따른 제반비용 절감 등
- (장기) 재정 건정성 제고, 우수 인력 확보에 따른 생산성 증대, 시장 신뢰 구축 및 브랜드 가치 상승 등

II

추진단계별 주요 내용

- ◆ 「 계획 수립 - 규범 마련 - 실행 - 협력 - 평가와 개선 」의 5가지 추진단계별 전략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 제시

1. 계획 수립

- 기업의 미래 전략과 목표에 부합하는 **반부패 계획**을 수립
 - 과제별 일정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**단기 및 중장기 계획**을 수립하고, **실행, 평가 및 환류**의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성 담보
 - ※ (단 기) 인력 및 예산 확보, 청렴규범 마련 등 선행 과제 중심
(중장기) 청렴계약 의무화, 클린카드 등 새로운 부패 예방제도 도입 추진
- **컨트롤 타워**를 통해 계획 수립, 인적·물적 자원 배분, 관련 사업 총괄 관리 등의 업무를 책임성 있게 수행
 - ※ 기존의 컴플라이언스 담당 조직이나 윤리경영 담당 부서 활용 가능
 -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조직 내 **독립성을 확보**하고, **임원급 책임자**를 지정하는 방안 검토

2. 규범 마련

- 내부 구성원들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이 되는 **청렴규범**을 마련하고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채널을 통해 **전 직원에 공유**
 - ※ ‘청렴규범 서약식’ 등의 행사를 통해 임원진의 청렴규범 준수 의지 표명

3. 실 행

가. 부패신고제도

- 기업의 부패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**부패신고시스템**을 마련하고, 명확한 신고 처리 절차를 도입
 - ※ 부패신고자의 불편함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화, 인터넷, 우편, 팩스 등 다양한 방식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필요
- 신고자 보호, 비밀 준수,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 내부 임직원 대상 교육 및 홍보 적극 실시

나.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제도

- 금품수수 금지
 - 청렴규범 등 사규에 금품수수 금지 원칙 및 위반시 제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, 금품수수 신고센터 마련 검토
 - ※ 임직원이 제공받은 금품등을 센터에 맡기면 센터에서 제공자에게 돌려주거나 기부하는 형태로 처리, 조직 차원의 대응을 통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막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선책 마련 가능
 - 대관업무에 배정된 예산 조정 및 클린카드 제도 도입 등 사전 예방적 조치 도입 검토
 - ※ 클린카드는 유흥업소 등 특정 가맹점에서 결제가 되지 않도록 업종 제한 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로서,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기업에서도 사용 중

○ 부정청탁 금지

- 기업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및 받는 경우 모두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부정청탁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해 사규에 반영
 - ※ (부정청탁을 하는 경우) '청탁금지법'에서 정한 부정청탁 유형 (부정청탁을 받는 경우) 기업 내부정보 누설, 계약 체결 관련 청탁 등
- 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청탁등록 시스템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관련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
 - ※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청탁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조치(업무 담당자 변경, 계약 대상 배제, 수사기관 통보 등)를 취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

다. 공익신고제도

- '공익신고자 보호법'에 따른 신고 처리절차 기준 및 신고자 보호규정 마련
 - ※ 공익신고의 접수·조사 방법, 조사결과의 통지, 개인정보의 보호, 신고자 불이익 금지, 공익침해행위 내·외부 통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
- 신고창구를 마련하고, 신고처리 전담인력 및 간부급 책임자를 두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건 처리 기반 마련
 - ※ (신고창구) 별도의 공익신고 창구를 두는 방안, 부패신고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, 전문 기관에 외부 위탁하는 방안 등
- 공익침해행위 사전 예방, 철저한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내부 관련 부서 및 외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

라. 내부감사제도

- 기업의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감사의 **절차와 기준을 확립**하고 **감사 범위를 재검토**
 - ※ 부패의 개념 확대,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감사 대상 범위에 부패행위 신고 해태행위, 공익침해행위 등을 포함시킬 필요
- **감사 결과를 내부 공유**함으로써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개별 사건 처리뿐만 아니라 **근원적 제도 개선**으로 연계
 - ※ 내부감사의 대상과 내용, 적발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, 수범사례 등을 공개하는 경우 교육 및 예방 효과 기대 가능

마. 상벌제도

- 직원 **의견수렴**, **전문가 자문** 등을 통해 인사규정 등에 적절한 상벌제도를 도입하고, 관련 기준을 명확화
 - ※ 구체적인 대상 및 상벌수준, 타 제도와의 형평성, 실현가능성 등 고려
- **확정된 기준의 공유 및 예외 없는 적용**을 통해 내부 구성원들에게 청렴 실천을 위한 자발적 동기 부여

바. 교육프로그램 운영

교육계획 수립

- 체계적인 청렴 교육을 위해 교육 주기와 대상, 내용과 방법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**교육 계획 수립**
 - ※ 기존 교육 프로그램(직무, 소양)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

□ 교육프로그램 개발·운영

- 일반 청렴 소양교육뿐만 아니라 대상별, 주제별, 상황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
 - 임원, 승진자, 신규자 등 직원의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주요 시기별 집중 교육 실시
 - ‘청탁금지법’, ‘공익신고자 보호법’ 등 기업 경영활동 관련 법령, 청탁등록시스템, 클린카드 등 주요 청렴제도 관련 주제별 교육 실시
 - 실제 사례를 활용한 역할극, 시뮬레이션 등 상황별 청렴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 극대화
- 강의형 교육 외에도 참여형(청렴게임, 공감토크 등), 공연형(청렴 콘서트 등) 등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적극 활용

4. 협력

-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유기적인 반부패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반부패 활동의 지속성·효율성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
 - (정부기관) 중앙정부, 지자체 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반부패·청렴활동 및 윤리경영 지원 정책에 적극 참여
 - (유관기업) 자회사, 협력사, 컨소시엄 참여사 등과의 청렴 워크숍 개최, 청렴계약 체결 등 유관기업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 유도
 - (시민단체) 경제단체,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의 기업 감시 및 지원 활동, 윤리경영 세미나 등에 적극 협조

5. 평가와 개선

- 부패 예방을 위해 **노력한 정도와 그 성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**
 - 노력도 및 성과 평가를 위한 **자가진단 틀**을 각각 마련하고, 각 평가별 **평가 시기 및 주기**를 설정

- **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반부패 전략을 수립, 차년도 및 중장기 계획에 반영**
 - ※ 노력도 및 성과 평가 간 연계 분석을 통해 당해 조직에 가장 적합한 반부패 추진 전략을 발굴할 필요

- **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**
 - ※ 평가 결과를 지속가능보고서 또는 사회책임보고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 검토